

137

12

김영삼정부와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일 시 : 1994년 8월 29일 오후 2 - 5시

장 소 : 변호사 회관

주 죄 :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단회의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출판의 자유를 생각하는 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김영삼정부와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진행사회 : 최갑수(공대위 집행위원장, 서울대 서양사학과)

발제 1. 신공안정국과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김상곤(민교협 교육위원장, 한신대 경영학)

발제 2.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학술적 평가
이종오(학단협, 계명대 사회학)

발제 3.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신장수(민변, 다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토론사회: 김대환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인하대 경제학)

종합토론: 김영현(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부위원장)
· 권인호(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정책위원장)
· 이광호(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
· 한철희(출판의 자유를 생각하는 모임, 돌베개출판사 대표)
· 정희섭(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실장)
· 성문정(전국대학원생협의회 의장)

주최 :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안정국과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김 상 곤(민교협 교육위원장, 한신대 경영학)

1.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현 정권의 성격

우리 사회는 지금 ‘공안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다. 국민들은 극심한 혼돈상태에 빠져 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과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그런데 구시대의 유제들과 기득권집단의 소영웅들이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정국을 혼미에 빠뜨리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모두의 나아갈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발전하며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은 보다 나은 미래 사회를 쉬임없이 창조해 나갈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현재 교수들에게까지 몰아닥치고 있는 반민주적 역풍의 실체를 총체적으로 구명하고자 한다.

지금 세계는 미소 중심의 양극체제가 깨진 후 탈냉전의 구도 속에 국제화, 세계화의 논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확대되고 있다. 이전의 IMF-GATT체제는 IMF-WTO체제로 새로이 재편되고 자본의 국제화와 초국적자본의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미, 일, EC의 3극체제 속에서 지역주의와 지역블록화가 더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슈퍼301조의 부활에서 보듯이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정치 경제적 총공세를 펴고 있으며 UR에 이어 GR, TR, BR, CR 등 선진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세력재편을 위해 북미회담을 성사시키고 한반도의 정세변화까지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김영삼정권이 출범 1년반을 경과하면서 비록 슬로건일망정 개혁을 앞세워 군부정권과의 차별성 내지 현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던 초기의 태도에서 벗어나 노골적으로 구기득권 세력과의 결탁을 강화하는 가운데 통치기반의 확충을 꾀하고 있다. 국립경상대 현역교수 9명이 공동집필하여 4년여간 강의교재로 사용해 오던 “한국사회의 이해”가 새삼스럽게 공안당국의 사법대상이 된 이번 사건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 8월 1일 대검 최환 공안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교양교재에 대해 내사 중임을

발표함으로써 드러나기 시작한 이번 사건은 박홍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과 연계되어 보도되면서 언론에 의해 왜곡 과장되고 그 과장이 확대되기 시작되었다. 8월3일 창원지검과 경남도경이 집필자 8명(1명은 해외출장 중)과 출판사대표에게 공식으로 출두를 요구하자 다음날 집필 교수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혔다. 해당교수들은 검찰의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일부 언론의 지극히 편향된 보도태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민교협, 민변, 학단협, 민예총, 언노련, 국교협, 사교련 등 7개단체는 5일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이후 민족문학작가회의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출판의 자유를 생각하는 모임 등 3개단체가 참가하여 공대위를 발족시켰다. 8월13일 공대위 공동대표단은 창원지검을 항의방문하였고 이어 진주 경상대에서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전국민 서명발대식'을 가졌다. 초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당연히 해당교수들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했던 경상대학교 당국은 공안당국과 보수언론의 공안몰이가 거세어지자 총장 명의로 사법처리의 조속한 완결을 촉구하더니 급기야는 교과과정위원회를 열어 2학기 강의부터 '한국사회의 이해' 강좌를 폐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교수들은 그러한 학교당국의 결정이 교수들의 교수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반박하고 즉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공안당국은 교수, 연구자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양심적인 세력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반박과 저항에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지난 24일에는 태도를 돌변하여 해당 집필교수들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새벽을 틈타 경상대에 진입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은 권력의 치밀한 지배구도와 공안당국의 은밀한 사전계획 아래 조작된 것임이 백일 하에 드러났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조성되어온 정치정세와 관련하여 현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 지배구조, 권력기반, 지배집단의 성격, 사회적 재생산구조 등의 측면을 종합해 보면 현 정권의 지배양식은 현재의 논의와 관련해서 볼 때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강권적인 공안통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공안정국이란 기본적으로 공안통치의 속성인 획일성, 폭력성, 독재성이 가일층 강화되는 국면을 가리킨다. 필자는 여기서 현재의 정치사회적 국면을 이전의 군부정권 시기의 특정 정국(1989년 노태우정권이 중간평가약속을 파기한 이후 조성한 정국)과 대비하여 신공안정국이라고 규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현 정권의 공안통치적 성격을 전제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김영삼정권은 5·6공 군부정권과의 결탁인 3당합당을 통해서 비로소 출범할 수 있었던 정권이다. 필자는 이러한 한계를 현 정권의 태생적 한계라고 본다. 이 태생적 한계가 최근들어 신공안정국으로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 필자는 이번 사건의 정치사회적 본질을 권위주의적인 김영삼정권의 한계와 관련지어 분석하고 이 사건이 국민기본권의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현 정권의 시기별 성격과 부문별 정책의 전개과정을 개괄하고 현 정국의 성격과 구조를 검토한 후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조망하고자 한다.

2. 김영삼정권의 시기별 성격과 부문별 정책

(1) 시기별 개괄

김영삼정권 1년반은 작년 12월초의 UR정국을 경계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작년 2월 출범 후 9월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하기까지 김정권은 권력기반의 확충과 지배집단의 재편을 위해 오랫동안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던 군부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사정'을 전개하고 학원가의 묵은 비리를 감사하는 등 개혁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후하여 청와대와 재벌 총수들과의 면담이 차례로 진행되면서 독점자본과의 태협이 노골화되었다. 금융실명제는 실시과정에서 기득권세력에 대한 양보를 확대하였고 이후 12월의 UR타결을 계기로 김영삼정권은 반개혁적인 전환을 분명히 보이게 된다. 신경제정책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기층 민중에 대해 고통분담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였고 국보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등은 군부독재 아래의 악명높은 독소조항 조차 개폐하지 못하고 있다.

금년들어 김영삼정권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독점재벌 중심의 사회경제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재생하여 민주화와 자주화이념을 무력화하고자 하고 있다. 대미종속적이고 반민족적인 흡수통일론은 최근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보다 분명하게 언명되었는데 특히 지난 6월 이후 정부 내 수구세력과 일부 보수언론의 유착 속에 전쟁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면서 북한에 대한 핵폐권주의적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김일성 전 북한주석과의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한때 국면전환이 예상되기도 하였으나 김일성 전 주석의 사망(7월8일) 이후 소모적인 '조문논쟁'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신공안정국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2) 김영삼정권 1년반의 부문별 개괄

a. 정치/외교

현정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정치는 폭력적인 공권력에 의존하고 국제정치는 공안통치를 위한 장식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년반동안 국민들은 구시대의 반민주적 기득권세력을 척결하고 개혁된 민주사회를 이루려 주기를 기대했지만 민주계를 비롯한 접맥세력은 오히려 기득권적 수구세력화의 길을 걷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떠한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한미간의 종속적 군사외교관계도 개선하고 남북관계도 대화와 태협으로 풀어나갈 것임을 시사하였다. 정권 초기의 이러한 입장은 외교안보팀에 비교적 개혁적인 인사를 임명하고 장기수 이인모노인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정치외교면에서 미일 등과의 국제공조체제가 다시 강조되고 대북강경노선이 잇따라 표명되었다. 최근 엠네스티의 남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발표를 계기로 남한의 국보법

폐지권고 등에 대해서는 합구한 채 북한의 인권상황을 내걸어 남북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하는 것이나, 북미간 외교연락부 설치가 합의된 현시점에서 이미 북미 간에 북한의 과거핵에 대한 투명성 확인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수로지원의 선결조건으로 특별사찰이라는 형식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남북관계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적인 접근을 포기하고 자주적인 주도권마저 상실한 상태에서 현정부가 국내의 공안정국 조성용으로 북핵문제를 아직도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고 있다.

미국은 현정권이 펼치는 공안통치의 약점을 활용하여 북미관계의 강온책을 김영삼정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제와 통상 면에서 실리를 한껏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UR의 선 국회비준을 강요하고 자국상품의 강매(심지어 미국산 자동차의 관용차화까지)를 요구하는 등 정치경제적 주권침해를 제국주의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는 현정권이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국내정치에서도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현 정권은 한마디로 국제정치의 흐름과 방향에 역행하는 '국제적 미아'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는 국내정치의 반민주성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b. 경제/사회

작년 5월 신경제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김영삼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폭력으로 집단이 기주의를 관철하려거나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30여일간의 직장폐쇄 끝에 재개된 노사협상에 임하는 현대중공업사장에게 합리성과 법리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6월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 등에서와 같은 폭압적인 공권력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내세워 노동부관계자들은 자율협상의 선례를 남겼다고 자찬하고 있다.

김영삼정권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하에 노사정 간의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여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노동자 보호조치를 완화하고(산업안전관리자 의무고용의 완화, 사업장 근로감독의 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근로자파견법의 도입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기술과 고품질, 고부가가치가 국제경쟁력의 기본요소로 되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혁명의 추세에도 역행하는 뒤떨어진 노동통제만능의 축적정책으로서 그 자체로도 경제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노동관련법의 개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정권은 자본중심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민주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김영삼정권의 태생적 한계는 경제정책에서도 두드러지는데 현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군부정권 시기와 변별되는 개혁적 방안을 제시한 바가 없다. 신경제정책이 강조해 온 '민간자율성의 강화'란 경제개혁이 아니라 경제성장 우선의 논리에 입각하여 독점재벌의 축

적을 도모하는 자본재편 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역대 군부정권이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위기를 타개해 온 해묵은 논리의 답습이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도 김영삼정권은 복지의 확충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역대 정권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현정권은 민간자율을 위해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미명 하에 그간의 명목뿐이던 환경규제장치를 그나마 무분별하게 풀어놓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경우 그 핵심인 자금출처조사가 재벌들의 반발에 밀려 사실상 백지화되었고 차명자산의 실명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상당 기간 유예됨으로써 '개혁'의 내용을 채우지 못했다. 작년 10월 확정된 업종전문화 정책은 재벌그룹의 소유분산을 유도하여 경제력집중을 완화한다는 초기의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한도를 철폐하고 은행의 자금운용의 자율성 폭을 확대하는 등 재벌기업의 합리적 재편의 방향과는 달리 오히려 재벌기업의 주력업종 지원정책으로 변질되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이 퇴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저 재벌들의 집단이기주의적 담합 앞에 휘청거리고 있다. 최근 토초세법이 현재에서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자 재계와 집권 기득권세력 내부에서는 환영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차제에 토초세법의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토지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자연자원이면서 그 공급이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재산중식의 수단으로 방기하여 대다수 국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유린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알맹이를 제거한 채 이 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농촌 농업문제의 인식에 있어서도 김영삼정권의 '신농정'은 농업의 경쟁력육성을 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는 농업정책의 하위목표가 될 수 있을 뿐 기본목표가 될 수 없다. 한 사회에서 농업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농촌 취업기회의 보전 등 보다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차원에서 보호육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구조 개선방향은 농민적 복합경영을 발전시키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협동생산조직을 육성하여 지역농업을 조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질적인 농산물가격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아울러 외국농산물 수입을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 UR비준에 대해 정부 및 민자당은 이를 기정사실화(김철수상공부장관이 WTO 사무총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하고 있으나 UR농산물협상은 국제적으로도 재협상의 여지가 크므로 국회는 UR농산물협상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을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업발전의 진정한 힘은 농민의 농업 생산기술 축적 및 유통을 위한 협동조직 운영능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농민의 자주적 역량이 배양될 수 있도록 자발적 농민조직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농협의 민주적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농민들의 UR반대투쟁을 주사파의 사주에 의한 반미투쟁의 일환으로 몰아부친 박홍 서강대총장의 발언이나 이를 지지한 현정권 내 공안세력의 발상은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다.

c. 교육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동안 군부정권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 확산하면서 권

력과 유착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 교육계에는 관료주의와 금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우리 교육계의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박홍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을 대학의 최고 책임자라는 일부 총장들이 아무런 확인도 없이 지지서명한 권교유착의 행태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연구 교육 사회봉사의 임무를 떠맡고 있다. 대학은 권력과 금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치와 자율에 기초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대학은 반교육적인 정권과의 유착관계 속에서 관제이데올로기장치로 전락해 왔다.

김영삼정권은 초기에 일부 대학의 입시부정이 밝혀지자 사립대학 재단의 비리를 조사하는 등 교육개혁을 시작하는 듯 했으나 그 관련범위가 현정권의 권력 핵심부와 교육부 고위 관료 등으로 확대되어 있는 것이 알려지자 서둘러 사건 자체를 축소하고 나아가 교육개혁 자체를 포기하고 말았다. 우리 교육은 이념과 제도뿐만 아니라 교육체계와 관리 당사자까지 전반적인 위기상황에 놓여있으며 이의 혁신 없이는 사회발전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김정권은 대선 공약사항의 하나인 교육개혁위원회 자체를 정권 출범 1년이 지난서야, 그것도 구태의연한 인사들로 구성함으로써 현정권이 교육개혁의 의지와 계획이 없음을 드러내었다. 김영삼정권의 대학교육정책은 철저하게 교육을 상품화하여 시장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경쟁력강화라는 소수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교육부문에서도 그대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국내 대학간 경쟁 유도는 결국 소수 대규모 대학만을 구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국가재정에 비추어 현재 GNP 대비 4.3% 수준인 교육예산을 5%로 높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하면서 시장논리에 따른 교육의 과행과 사교육의 팽창을 부추기고 있다.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보하고 대학의 자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대학의 실질적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권은 대학(특히 사립대학)의 홀로서기만을 강조하고 대학 간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사립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영세하거나 역사가 짧은 대학의 폐교위기는 물론 국내외 거대 대학의 문어발식 분교확장을 조장할 것이다.

3. 민주화추진세력과 김영삼정권의 변화 가능성

김영삼정권은 5, 6공 세력과의 단절이 아니라 결탁을 통해서 비로소 출범이 가능했던 정권이다. 그리하여 김정권은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을 분리하여 일부 시민운동세력을 정권의 외곽조직으로, 혹은 기존의 사회운동의 대체세력으로 배치하고자 기도하면서 사회운동, 특히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 민중의 생존권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작년 상반기 현대사태와 관련하여 악명높은 군부정권시대의 제3차개입금지조항을 적용하여 단병호 위원장 등 전노협관계자들을 '문민정부'의 최초의 수배자로 삼았던 것과 사문화되다시피 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던 것 등은 그 좋은 예이다. 금년 들어서는 전기협과 지하철 노동자들

의 쟁의에 대량 수배와 해고조치로 대응하였고 광주 금호타이어의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대거 투입, 포크레인 등으로 강제 해산하였다. 그밖에 한진중공업 노동쟁의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 금년 상반기 각종 노동쟁의에 대한 김영삼정권의 친자본적 공권력개입의 형태와 수위는 과거 군부정권의 그것을 능가할 만한 것이었다. 현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교단개혁을 부르짖는 승려들을 무차별 공격한데 이어 역대 군부정권조차 선뜻 나서지 않던 종교기관에까지 마구 난입하여 종교시설물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조계사 난입, 기독교회관 난입, 연세대도서관의 무차별 난입 등은 현정권의 이른바 문민성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게 하는 일련의 사건이었다. 이 모든 것은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채 억압할 수 있다는 파시즘적 발상에서 나온 행태들이다.

올 8월들어서는 김일성 전 북한주석의 사망과 관련한 조문논쟁에 뒤이은 박홍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망언 등으로 정국이 대북 강경분위기로 치닫는 속에서 다시 민간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었다. 정권 측은 8월15일 서울대에서 범민족대회 행사를 가지려던 시민, 학생들에게 헬리콥터 다섯대를 동원해 최루액을 살포하는 등 사회운동 탄압의 '신기원'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범민족대회가 국보법 철폐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방안, 핵문제 일괄타결 등을 주장한다는 점을 들어 북한에 동조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국보법 철폐는 엠네스티뿐 아니라 미 국무부까지도 한국 정부에 권유하고 있는 사항이며 북핵 일괄타결은 이미 북미회담에서 타결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상호체제 인정이 그 골자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명시되어있는 사항이다.

통일방안에 대한 사회 각부문의 견해는 다양한 논의 속에서 최선의 방향으로 수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정부의 히스테리칼한 반응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견해표명에 대한 폭압이며 유린이다. 더욱이 그 탄압방식이 점점더 폭압화하는 것은 '문민'이라는 수사를 방패삼아 현정권이 국민 일반의 기본권에 대해 얼마나 방자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폭압사태는 현정권이 자신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수구 세력과 단절해서는 정권유지기반을 달리 확충할 자신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자행되는 것이라고 본다. 김영삼정권은 그 출범 이후 대자본 층의 신뢰와 동의를 확보한다는 기조에서 사회경제정책 및 노동정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노사관계 및 농정의 이른바 '합리화'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도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문민개혁'은 고통분담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기층민중에게 자본축적의 부담을 전가하는 기제로서 작용하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김영삼정권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 수구세력과 스스로를 구별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 민자당의 당정개편은 그러한 평가가 지극히 부정확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 이번의 당정개편은 현정권의 출생기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민주계가 김종필대표를 위시한 공화계 및 민정계를 향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그들 기득권 그룹에 끌려가면서 결탁을 강화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 이번 당정개편에서

내년의 4대선거를 감안했다는 주요 시도지부장 인선이 민주계의 김영삼대통령 측근 및 민정계 주요 인사에게 안배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결국 현 정권은 민주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득권적 수구세력을 형성하려고 암간힘을 다하고 있다.

4. 신공안정국의 조성목적과 구도

현 정국을 신공안정국으로 부르는 것은 현재의 정세가 1989년 6공 당시의 공안정국과 일정한 맥락에서 유사하다는데 기인한다. 우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빌미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1989년에는 고 문익환목사 및 임수경양의 방북사건을 빌미로 삼았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전쟁분위기의 고조 등 대북관계의 경색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다음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노리는 바는 무엇인가. 1989년과 1994년 모두 공안세력 주도 하에 남북문제를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으며 이를 빌미삼아 국민의 기본권 요구를 압살하고 그러한 요구를 주도하는 민주화추진세력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1989년 당시에는 전교조 등 교육민주화운동이 공안정국의 주요 타격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학생운동 및 기층 노동운동이 공안정국의 1차적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1989년에는 13대 대통령선거의 공약사항이었던 중간평가약속을 무화시키고 권력기반을 재생산하려는 기도가 맞물려 있었다면 이번에는 민자당 내 민주계와 공화, 민정계 간의 대립적 파벌을 해소하고 계파 간 결합을 강화하여 내년 선거정국에 대비한 권력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공안정국을 주도하는 세력구도 역시 1989년의 구도와 현재의 구도는 유사하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검찰 및 안기부 등의 공안세력과 내무부가 강성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교육부, 법무부, 공보처 등이 대책과 방안을 조율하고 언론이 바람잡이 역할을 기꺼이 자임하는 구도가 그것이다.

이번 신공안정국 조성에서 특히 언론은 왜곡 편파보도와 과장보도를 통해 가히 일등공신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지난 6월의 전쟁분위기 유포에 이어 7월에는 조문논쟁과 주사파몰이, 8월에는 경상대 사건 등 일련의 공안 사건 속에서 언론은 공안당국의 발표와 박홍총장의 발언 등을 사실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과장보도하면서 일련의 방송, 기획기사, 사설, 논평 등을 총동원하여 냉전논리를 확산하였다. 경상대교수들에 대한 검찰의 내사발표만을 가지고 그들은 '붉은 교수, 이대로 좋은가' 식으로 공안분위기를 앞질러 갔다. 야당 대표로서는 오히려 너무 늦게서야 현정국을 '공안통치'로 비판한 이기택대표에 대해서까지도 언론은 폭력시위의 방조자로 몰아부쳤다. 극우강경론을 펴는 언론계 보수논객들은 언론의 최소한의 균형감각조차 갖추지 못하고 비이성적 몰아부치기로 일관하였다. 그들은 이제 서서히 그 발언의 근거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박홍총장의 마구잡이 발언을 '지식인의 용기', '성직자의 양심'으로 추켜세우고 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주사파를 옹호하는

친북세력'으로 매도하였다. 언론은 드디어 지난 25일에는 박홍총장에게 의도적인 해명 및 거듭물이의 기회를 주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언론의 매카시즘을 지적하는 논자에 대해 그들은 '김일성을 욕하는게 매카시즘이냐'는 식으로 이성적 토론을 봉쇄함으로써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섰다. 이러한 언론의 방약무인한 보도태도는 이른바 사회의 냉전논리적 '지도급' 인사들의 지원을 또한 배경으로 삼고 있다.

필자는 이같은 언론의 보수회귀 또한 김영삼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영삼정권 초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언론계 역시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였다. 3공과 5, 6공을 경과하면서 권언유착 속에 기득세력으로 깊이 뿌리내린 언론내 보수집단 및 정부 내 언론기관 출신 관료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공감대 앞에 한때 주춤하는 기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현정권의 개혁이 그 태생적 한계 속에 사그라들면서 이번에는 당연히 이들 수구세력의 자기방어적 반격이 공안물이 속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차제에 언론 전반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제가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이번 신공안정국의 공신으로 우리는 공안물이 돌격대로서 혁혁한 역할을 함으로써 검찰과의 공안합작에 앞장선 박홍 서강대 총장을 빼놓을 수 없다. '각계에 침투한 주사파가 750명'이라고 숫자까지 밝힌 그의 발언(이는 25일 여의도클럽 기자회견에서도 거듭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자칫 관련 당사자의 사회적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중대한 발언임에도 그의 일련의 발언을 쫓아 대책회의조차 열어가며 지원을 독려했던 검찰은 한달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한 지금에 와서 겨우 '주사파에 관한 그의 제보가 수사의 단서로 삼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시대의 양심'으로 그를 추켜세웠던 언론은 이제 와서 사과 한마디 없이 그의 발언을 본인의 의도에 따라 '국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충정' 정도로 축소 보도하려 애쓰고 있다. 더욱이 그의 발언이 어떠한 명백한 근거도 대지 못한 채 정황과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오락가락 하는데도 검찰과 언론은 의도적으로 사실확인을 방기한 채 그의 '폭로'를 선전해 왔다. 이미 지난 1991년 강경대 정국에서도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발언하여 재야의 도덕성에 찬물을 끼얹고는 자신의 발언이 물의를 빚자 뒤늦게 자신이 말한 어둠의 세력은 구체적인 어떤 집단이 아니라 추상적인 비유였다고 말을 바꾼 바 있는 박홍총장의 소영웅주의적 자기과시벽은 공인으로서의 자질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마저 저버린 것이다. 아울러 박홍총장의 주사파발언에 대해 제자들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지는 속에서 그의 발언에 지지 서명을 한 일부 총장들의 작태는 권교유착의 표본일 뿐만 아니라 근거없이 제자들을 공안당국에 팔아넘김으로써 스승으로서의 최소한을 포기한 행위이다.

5.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이번 경상대 사건은 지방 소도시 대학의 교수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안물이의 희생양으로 살으려 했다는 점에서 김영삼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필자는 이 사건이 첫째, 반김영삼정권 세력에 대한 제거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둘째, 지배집단의 권력기반 확충과 권력중심의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진보학문을 탄압하고 비판적인 교수를 무력화하려는 전초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군부독재 하에서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은 사례는 수없이 많으나 현역 교수의 전공논문이 직접적인 탄압의 대상이 된 비근한 예로서는 1988년의 서관모 교수 사건을 들 수 있다. 1988년 6월 검찰은 서관모 교수가 한양대에서 열린 10개학술단체연합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 '중간재계층의 구성과 민주변혁에서의 지위'에 실정법 위반혐의가 있다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당시 검찰은 10개 학술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300여명의 교수들이 서명에 나서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서 교수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무혐의처리하는 것으로 종결했다. 당시는 6공정권 출범 초기로서 여소야대의 정국 하에서 언론도 검찰을 몰아부치면서 학문 사상의 자유를 엄호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번 경상대 사건의 경우는 현역 국립대 교수 9인이 공동 집필한 교재로서 4년여 강의 교재로 사용되어온 책을 새삼스럽게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례가 없는 침해사례로 지적된다. 더욱이 검찰은 해당 강좌의 레포트와 시험 답안지까지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였고 대학당국은 해당 강좌의 폐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교수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번 사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의미, 사회발전과 대학의 존재 의의 등을 공안이란 정권안보적 잣대 하나로 재단하려는 실로 위험천만한 발상이요 작태이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대학은 다양한 연구와 견해에 바탕하여 사회의 문제점과 역사발전의 미래상을 폭넓게 탐구함으로써 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대학의 본래 역할은 실인즉 이번 사건에서 공안당국이 주장하는 '이적성'의 개념과 효과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현상, 모든 주장에 대한 탐구와 검증에 있다. 설사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교수들의 관점이 기존의 관점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평가는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에 맡겨져야 한다. 한 사회의 학문과 사상의 발전은 이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고전적 시민권인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는 본래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근대 사회발전의 기본장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김영삼정권의 이번 기도는 대학교육 조차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관계 이데올로기의 암송 수준에 묶어놓으려는 것이다. 대학사회 내에서의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조차 이런 수준으로 억압받는다면 일반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는 도대체 어떤 수준까지 추락할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한 사회의 비판정신이 이렇게 정체되고 퇴행할 때 그 사회의 균형있고

풍요로운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6. 맷음말

이상에서 볼 때 현 정부는 대학과 사회의 민주화 및 자주적 통일이라는 국내외적 당위성에 역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일부에서는 공안통치와 공안정국의 퇴조를 기대반 예상반 속에 거론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대나 예상을 지지할 만한 어떠한 뚜렷한 징후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 정권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현정권은 국제적으로는 고립을 면치못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현정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교육관계법, 출판·언론관계법, 집시법 등 각종 악법이 개폐되어야 한다. 그리고 UR에 대한 국회비준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기도가 철회되고 농업과 농민의 희생책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속에서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내외의 정세변화에 걸맞는 이념과 정책이 개발되기 위해서도 이 기본권의 폭넓은 보장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국민들의 창의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수렴될 수 있는 사회기제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경상대 교수들에 대한 이번 공안당국의 탄압사례는 단순히 특정 교수들에 대한 탄압, 진보적 학문에 대한 탄압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전반적인 국민 기본권에 대한 탄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또한 앞에서 말한 법 개정의 기본방향이기도 하다.

첫째, 교수 및 연구자의 연구활동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 전반의 민주적인 개혁이 교육민주화를 추진하는 당사자들의 활발한 토론과 범국민적인 의견수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기득권적 교육관료조직이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방안, 그리고 보다 나은 이념과 체제를 연구하고 토론 할 수 있는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출판 예술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작업들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현재의 국면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항들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정권은 공안통치를 철회하고 집권에 즈음하여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는 각종 민주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참된 용기와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극복해 왔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기득권적 수구세력은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역행하는 만행을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 앞에 사과하면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박홍 서강대총장은 자신의 언동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 학생, 시민 등 당사자들과 국민 일반에게 공개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추수하여 지지 서명을 낸 대학 총장들은 더이상 대학민주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은 모두 억압과 핵박이 없는 사회, 공포와 불안이 없는 사회, 부패와 부조리가 없는 사회,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사회, 악법과 통제가 없는 사회에서 더불어 살기를 갈구한다. 우리 모두는 대다수 국민과 더불어 자유 민주 자주가 넘쳐 흐르는 통일사회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용기있게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민주와 통일시대로 맞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한국사회의 이해”에 관한 학술적 평가

이 종 오(학단협, 계명대 사회학)

215

현재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대학 교양 교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경상대 사태는 한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를 이루고 있다. 이의 본말을 이해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이 책에 관한 학술적 이해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단일 저자에 의한 저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과학의 분야에서 여러 필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 관한 전문학술적 평가는 역시 다양한 주제에 관한 개별 전문가 들에 의한 개별 작업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부족하나마 이미 학술단체협의회 소속 전문학회 들 즉 역사문제연구회, 산업사회연구회 등에 의하여 평가자료로 제시되어졌다. 본 평가는 이러한 사전작업을 기초로 하여 이 책에 관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이 야기하는 개별적 쟁점에 관하여서는 개별 학문 분과 전문연구자들의 연구와 토론의 성과에 의지하여야 할 것이다.

1. 학문세계에서의 다양성에 관하여

우선 보아야 할 것은 이 책은 대학의 교양교육의 교재물이지 이것이 사회운동이나 사회과학계 내부의 논쟁을 위한 이론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교양교육이라 하며는 이는 개론서, 개설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광범한 주제에 관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사회과학 일반 그리고 사회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광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교양교육의 교재답게 각장의 말미에 토론식 수업을 겨냥한 토론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책은 다양한 필자에 의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몇 가지 공통된 자세와 주제를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한국학계 전반과 이

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의 주조를 이루어온 다소 막연한 개념이지만 “주류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적 자세이다. 이는 다소 생경한 느낌을 주는 “부르조아 사회과학”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전계서 21쪽)

다음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를 보고 사회과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의 무원칙한 객관성이 아니라 민중적 민족적 입장이라는 당파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단상황 하에서 토론과 공개가 어려웠던 근현대사 부문들 즉 항일민족운동, 해방과 분단의 과정 그리고 한국전쟁에 관한 사실들과 새로운 관점을 과감히 토론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는 결국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80년대 아래의 사회운동과 사회과학계가 이룬 성과물인 진보적 관점과 이에 의한 사회과학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려한 것이다.

현재의 경상대 사태를 돌이켜 볼 때 제기되는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과연 언제 까지 진보적 관점을 끈 불온한 관점으로 등치시킬 것이냐이다. 다음에 항일민족운동, 한국전쟁 그리고 주체사상 내지는 북한사회주의에 관한 토론과 연구 그리고 연구성과의 발표가 언제 까지 그리고 얼마나 제약받아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평자는 “한국사회의 이해”에 나타나고 있는 입장과 분석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거나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예를 들자면 평자는 “--6월 25일 38선 충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북한의 공세로 시작되었다는게 좀 더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전계서 101쪽)는 서술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1950년 6월 25일의 사태를 “38선 충돌”이라는 단어 내지는 개념으로 설명하는게 과연 적절하냐는 것이다. 다음에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북한의 공세로 시작되었다는게 좀 더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는 표현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냐 싶다. 또한 한국전쟁을 구조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것으로 보는 서술 역시 끝없는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역사과학에 있어서 과연 필연성이란 무엇이며 역사에 있어서 필연이란 무엇이냐는 역사철학의 기본 쟁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평자가 보기(결코 한국전쟁에 관한 전문연구가가 아니나) “제3장 분단국가 형성과 한국전쟁”의 필자는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 미국의 수정주의 학파 특히 브루스 커밍스의 관점과 분석을 상당 부분 깊은 고민없이 채택하고 있다. 이들의 학문적 성과는 기존의 한국전쟁에 관한 제한된 시야를 넓혔다는 점에서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으나 이들의 연구성과 역시 면밀한 사실적 논리적 검증하에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평자는 여기에서 한국전쟁론을 전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문세계에서는 진보진영이나 혹은 보수진영이라는 큰 틀내에서도 끝없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머릿 말대로 “완결되었다고 보지도 않을 뿐더러 완결될 수도 없는” 즉 열려있는 것이다.80년대, 90년대의 한국사회에 관하여서는 진보학계내에서도 수 많은 “이해”가 가능하며 경상대 교수들의 노작은 그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사회인 한에 있어서 한국사회에 관한 단일한 이해란 불가능한 사안이다. 사상과 학문에 있어서의 다양성 내지 다원성(pluralism)이 폐기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전체주의화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문과 교육의 논의에 관한

학문외적인 공권력의 개입이 존재하고 그것이 강화된다는 것은 불안하고 불길한 징후인 것이다. 학문과 사상의 세계에서는 항상 지배적 견해 혹은 다수설이라는 것이 있다. 학문과 사상의 발전 즉 인간의 지적 세계의 발전이란 바로 이런 지배적 견해에 관한 새로운 문제 제기와 지적 도전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지적 도전이 억압되고 금기야 폐기될 때 그 사회는 지적으로 황폐화되고 불구화 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창조적 자기발전 능력을 암살하여 그 사회의 해체 까지를 가져오는 것이다. 스딸린주의의 가장 큰 폐해의 하나는 당내에서의 맑스주의 논쟁을 금지함으로써 소련사회에서 맑스주의의 더 이상의 창의적 발전의 길을 봉쇄하였다는 데에 있다. 국내에서의 진보적 소장연구가들에 의해서도 북한의 “유일지도체제”라는 것이 사실상 북한사회주의 발전의 가장 큰 걸곡이 되고 있음이 이미 지적되고 있다.(이에 관해서는 물론 북한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다른 견해도 있다.) 한국사회는 물론 스딸린주의 소련이나 주체사상의 북한과 같은 정도의 통제나 폐쇄사회가 결코 아니나 식민지, 분단시대를 겪어오면서 전수된 전체주의의 잔재가 아직도 상당 부분 남아있다 경상대 사태라는 것도 결국 이러한 “달리 생각하는 자를 용납할 수 없었던” 냉전 전시체제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사회가 민주화, 자유화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 달리 생각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정도가 넓어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과거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포용할 수 없는 다원화된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사회를 친북, 반북 혹은 친공, 반공이라는 단순 잣대로 파악하려 한다면 이는 한국사회를 아마도 20년은 되돌리려고 하는 불가능한 시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류사회과학 혹은 “부르조아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이나 민중적 관점의 도입 그리고 항일민족운동이나 한국전쟁에 관한 새로운 견해나 관점의 소개가 그것이 기존의 지배적 견해 혹은 공식적 견해와 배치된다고 하여서 “이적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민주화를 지향하는 혹은 이미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는 한국사회에서는 몹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민중적 민족적 내지 진보적 입장에 관하여

과거에 한국사회에서는 진보 혹은 진보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시 되었던 시대가 있었다. 특히 50년대 말에 진보당 사건이 있으면서 진보라는 단어는 인민, 계급 등의 단어와 같이 이적, 용공이라는 단정을 물어오는 것 같아서 그러하였다. 지금도 역시 이러한 “대중적” 정서가 존재하는지 진보진영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진보 대 보수라는 어법 보다 개혁과 수구라는 “새한국식” 어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 과연 새한국, 새시대 혹은 통일시대를 열어간다면 50년대 아래로 간혀있었던 이런 단어들을 해방시킬 때도 되지 않았는가 싶다. 진보란 무엇이며 무엇이 진보적이냐는 항상 상대적인 문제이다. 19세기 유럽에서 사회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운동이 발전하고 있을 때 이는 브르조아적인(시민계급

적인)것에 대해서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사회주의 하에서 공산당의 당료와 이론가란 많은 경우에 그 사회의 기득권 세력 내지는 보수화 하였으며 그들의 진보성과 혁명성이란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맑스주의란 19세기 이래 진보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하였지만 90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 속에서 맑스주의=진보라는 등식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노동운동의 중심성을 주장하는 것은 진보적이었고 진보주의자라면 노동운동의 중심성을 주장하였지만 현재의 신사회운동 논쟁 속에서 이런 등식은 결코 자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런 사정은 민족주의 내지는 민족적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어와 개념은 상황에 따라서 항상 새롭게 읽혀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89년에 경상대 교양교재로서 선을 보인 이래 그간의 변화된 상황이 주는 의미를 수용하여 대폭 개정되었다 한다.(전제서 4쪽) 여기에서 필자들은 80년대 한국진보학계와 사회운동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는 한에서 변화된 세계와 한국사회의 현실을 이론적으로 소화하려하였으나 이 과제는 경상대 교수들을 포함하여 진보학계와 운동전체의 고민으로서 아직도 미완에 속하며 이 교재도 결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교재는 기본적으로 80년대 문제의식의 계승이며 89년 이래의 세계자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와 이에 입각한 한국사회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시가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경상대 교수들이 특별히 보수적이거나 혹은 아직도 급진적이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이는 한국사회와 한국학계의 발전을 회구하는 세력 즉 진보진영 전체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80년대 한국의 학계와 운동에서 민중적 그리고 민족적 입장장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도적적으로 이론적으로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19세기 산업사회의 현실에서 맑스주의자들이 노동자계급의 문제와 과제를 제기한 것이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민중적, 민족적 과제는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이나 혹은 제3세계 민족주의 세력이 패배하거나 약화되었다고 하여서 이로서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바로 94년에 한국사회가 경험한 철도, 지하철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파업사태나 그간 지리하게 끌어오는 북한핵문제, 남북대화에서 한국사회는 아직도 이러한 문제의 와중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족적, 민중적 과제를 중심에 설정한 학계의 흐름이 나타난 것은 기존의 한국사회의 지도층 혹은 지배층이 민족적, 민중적 문제의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데에 기인하였으며 이러한 지도층의 상태가 현재 80년대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지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다. 물론 문제의식과 문제 설정이 옳았다 하여서 이들의 모든 현상 분석과 나아가서 문제에 대한 처방의 정당성 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과연 올바른 현상분석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실천인가는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더구나 국가공권력은 결코 아니다. 이는 국가로 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토론과 실천의 장에서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학문과 교육의 장이라고 하여서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성역은 아니고 추상적으로 말하여 민주적 기본 질서와 인간성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과 한계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민주적 기본질

서와 인간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이해”를 볼 때에 이는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의심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진보적 입장이라는 것은 크게는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진취적인 입장 전체를 의미하며 좁게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에서 사회적 약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의 이해”에 관한 평가는 80년대 한국사회의 현실에 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80년대는 식민지 시대 아래로 전승되고 있는 민족문제와 한국사회의 극단적인 정치적, 사회적 억압구조에 대한 총체적 문제제기의 시대였으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과거의 억압구조가 부분적이나마 극복되고 있는 것은 많은 무리와 생경함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운동의 근본적 문제제기와 이를 해결하려는 실천의지에 힘입은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역시 이러한 80년대의 시대의식과 운동의 계승에 있다고 볼 때에 이들의 도덕성과 문제의식의 성실성을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책의 각론에 과학 토론은 가능하나 이 책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거나 이적성 여부의 차원에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한국사회의 이해”가 수사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며는 사실상 진보학계의 거의 모든 연구성과와 발간물이 역시 수사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만약에 맑스주의 사회과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사용한 모든 연구가 수사대상이 된다며는 사실상 모든 진보진영의 연구자와 저작뿐 아니라 주류 혹은 보수학계라고 일컬어 지는 부분의 상당수도 이를 면할 수 없다. 맑스주의 사회과학의 개념과 방법론은 이미 주요한 과학적 방법론의 하나로서 학계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사실 한국의 정치, 사회상황을 70년대로 되돌리지 않는 한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안당국이 구태여 “한국사회의 이해”를 문제화한 계기와 동기가 무엇인지는 실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수다한 진보적 입장의 저작물 중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며는 이는 세금의 낭비라는 측면 이외에 공안당국의 무지와 무능력을 나타낼 뿐이다.

이제 경상대 사태의 진행을 통하여 진보진영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이해에 다다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신장수 (민변, 법무법인 다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가. 1994.8.2. 방송과 일간지들은 대학교양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이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등 이적성이 있다고 하여 이 책의 필자 가운데 7-8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혐의)으로 내사중이라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8.3. 「한국사회의 이해」의 집필자 장상환 교수와 8명과 임경숙씨에 대해 출두요구서가 발부되었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대학의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구조적, 역사적 이해를 돋기 위하여 그간 사회학, 경제학, 역사학, 법학, 정치학 등 우리나라사회학계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위 책을 '이적성 여부'로 문제삼으려는 공안당국의 태도는 그간 이루어진 학문적 성과를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학문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대학교양교육의 교재로 이미 수년전부터 활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강좌의 개설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자율성의 근간을 이루는 교수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교육권이라는 교권의 핵심적인 부분을 침해한다 하겠다.

나. 대학교수들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자의적인 '이적성'의 잣대로 재단하고 사법조치하려는 것은 이전에도 거의 없었던 일로서 이는 기본권인 학문·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심지어 공안당국은 교수들의 시험지 채점과 과거의 민주화운동 경력까지 문제삼겠다고 하면서 교수의 수업권과 인신에 관련된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진보적 연구자들에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폐

지 필요성 및 국가보안법 적용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2.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

가. 배경 - 신공안정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1) 1994.2.25.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는 '미국은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혀 김영삼 정부를 난처하게 하였다. 이어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사면위원회 등이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안을 권고하여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폐지불가의 종전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에 바빴다.

더욱이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정국은 더욱 냉각되어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조문의사를 타진한 발언이 조문논쟁으로 비화되었다. 전남대 분향소사건 이후 각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이어 박홍서 강대 총장의 발언은 때아닌 매카시 선풍을 몰고 왔다.

(2)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994.7.31.까지 1년5개월 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모두 634명인데 그중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44.63%에 해당하는 283명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 283명 중 2/3에 가까운 179명은 최근 5개월간 구속되었으며 당분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의 극적인 반공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에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주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6.16. 안기부 등이 발표한 구국전위사건으로 23명이 구속되어 문민정부 이래 최대의 구속자를 내기도 하였는데, 동사건 관련자들 중 다수가 구국전위 전으로는 공소유지가 어려워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 한다. 이 사건의 발표는 특히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의 파업이 진행되고 철도, 지하철 공권력 투입이 행해지던 무렵이었고, 보수언론 등이 한총련, 주사파 척결을 외치던 시점과 일치하였다.

더우기 김주석 사망 이후 조문논쟁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8.9.에는 제5차 범민족대회를 앞두고 공동본부장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되었다. 특히 동동본부장 이창복씨 등에 대하여는 구속 당시 긴급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후영장 발부시에도 48시간을 넘겨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이 대두된 것이다.

나. 진보적 학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

(1) 서관모 교수 사건

1) 발단과 배경

1988.6.3-4. 한양대에서 열렸던 10개 학술단체들의 현합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서관모 교수
(충북대 사회학)의 논문 「중간체계층의 구성과 민주변혁에서의 위치」의 실정법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서울지검 공안부가 서 교수를 소환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
민주화시급하다.

6.14. 서울지검의 소환요구에 대해 서 교수는 출두를 거부했고 논문이 발표된 심포지엄
주최측은 위 소환조치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심포지엄에 참가한 10개 학술단체와 전국의 전임급 강사이상 학자 300여명이 서명운동을
폈다. 시기적으로 민주화열기가 충만하던 분위기 속에서 언론들까지도 학문과 토론의 장에
까지 뛰어든 공권력의 성급함을 비난함으로서 결국 사면초가에 몰린 검찰은 결국 소환대신
서 교수의 견해서를 우편으로 받은 뒤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2) 서 교수의 논문을 포함한 학술단체협심포지움의 의의

위 심포지움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학계의 이론적 관점과 연구방법이 사회전체의
종속화와 만물려 '학문적 종속화'로 치달아 왔음을 반성하고, 우리의 역사현실에 뿌리박은
민족적·민중적 학문을 지향한다는 연구자들의 굳은 의지가 공동으로 표출되어 인문사회과학의
학문적 깊이와 이념의 폭을 확장·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즉, 연구자들의 위와같은 지향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과학적 이론화를 위한 진지한
학문적 노력과 기왕의 분과학문의 기계적 분화와 단절을 극복한 분과학문 간의 활발한
연구결과의 교류와 문제의식의 공유를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시도된 것이었다.

연인원 3,000여명의 연구자, 시민, 학생들이 발표장을 찾아 경청하거나 직접 토론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발표의 요약문을 실은 자료집 1천여부가 순식간에 동이날 전도로 우리역사현실에 대한 총체적이고 비판적인 연구에의 관심과 성원은 대단한 것이었다.

3) 학문연구의 사법적 제제

검찰의 서 교수 소환조치는 위 논문이 안고 있는 '급진성'에 대한 공안당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고, 서 교수의 입건을 전제로 치밀한 내사를 마친상태에서의 검찰의 소환조치이 심포지엄을 주최했던 소장학자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서 교수 개인만의 문제가 아

니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학계 내부로의 학문적 논쟁으로 굳어질 뻔한 이 논쟁이 「학문적 자유와 공권력간의 대립」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다시 등장하게 되고 만 것이다.

위 서 교수의 이론은 오랫동안 굳어져온 권위주의적 정치구조속에서 학문적 연구의 풍토도 자유로운 연구와 비판기능을 억압받았기에 내부적으로도 많은 이론적, 방법적 반대의견이 존재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사회는 학문적인 이견도 일단은 학계가 연구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이를 여과하고 발전시켜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 교수의 논문은 설사 그 주장이 비현실적인 일면을 가지고 있다해도 학술연구회에서 발표된 학문적 탐구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진 논문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당시 신문보도만으로 알 수 없는 서 교수논문의 정확한 내용, 발표 진의 등을 참고로 알기 위해서라고 소환이유를 밝혔었다. 그러나 어떻든 일방적인 도그마가 아니라 검증과 비판의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대화와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와 학문연구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에서 민주주의의 요체를 찾아야한다. 따라서 학문연구의 대상, 방법, 시각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학술논문이란 것이 본질상 누구나 다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결국 전문학자집단의 토론과 비판을 거쳐야 할 것이지 사법적 제재를 동반하는 공권력이 개입할 영역은 아니었던 것이다.

(2) 서사연 사건

1) 발단과 배경

1991.6.27.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6명에 대한 연행, 구속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당시 '수서사건', '식수오염사건' 등으로 수세적 국면을 맞았던 정국이 광역선거에서의 압승과 민주운동의 수세적 상황에서 공세적이고 불법적인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 등 공안통치를 자행하면서 진보적연구자들과 연구활동에 대한 탄압이 정치적 책략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진보적 학술운동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사법대응으로 89년 서관모의 경우 당국이 수사했으나 조사차원에서 끝난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순수한 연구, 기고활동만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아 구속된 첫번째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서사연의 결성과 주요 활동

서사연은 87년 이후 사회구성체논쟁을 겪으면서 사회, 경제, 정치, 역사학 등 인문사회과

학 분야에서 비교적 동질적 방법론을 추구하고 있는 교수, 대학원생들이 모여 90.2.구성한 연구모임이다.

서사연은 80년대 발전해온 민중운동, 지식인 운동의 주요관심사들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민중민주주의'라는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을 '미국, 일본 등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에 종속되어 이루어지는 독점재벌과 국가권력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주의권변혁에 대한 학계의 폭넓은 논의와 관련하여 페레스 트로이카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 정책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던 모임이다.

결국 현직교수들과 석·박사과정의 연구원(즉 전문연구자)들의 연구집단인 연구소의 성원에 대하여 연구서 및 연구논문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적용하여 연행, 구속하고 심지어 경찰과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학술활동을 사찰하고, 군복무중인 연구자들의 입대 이전의 저술을 문제삼아 위 탄압을 주도하였다 것이다.

3) 재판과정에서 법적 적용의 제문제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근거로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 혐의사실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근거로는 서울사회과학연구소가 단순한 학문활동을 넘어 사회주의 운동의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과 그리고 '현실과 과학' 등 연구결과물 등을 통하여 민중폭력혁명을 선동해왔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

즉, 쟁점은 순수한 연구, 학문활동의 결과로서 집필된 연구성과물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점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그 내용의 전체적인 함의와는 무관한 지역별단적인 문구들을 자의적으로 선별, 나열하면서 '피고인들은 순수학술연구자들이 아니라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자들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을 각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제작, 반포혐의로 공소제기하였던 것이다. 또한 위 연구자들이 그들의 글을 통해 남한사회를 신식국독자로 파악하고 그 모순구조의 해결책으로서 '반제반독점민주주의혁명론'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보안법위법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적성이 없다는 서울대 소속 전문학자들의 증언을 배척한 채, 학문적 업적과 그 전력이 불분명한 관변 연구가들의 증언 내지 감정서만으로 위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이 사건은 형식은 성원의 개별적인 활동을 이적표현물의 작성, 소지, 배포라 하여 기소한 것이지만, 진보적소장학자들을 동시에 수사대상화함으로서 진보적 학술단체의 활동

을 위축시키고 학계에서 뿌리내린 진보적 학맥을 제한 내지 절단하려는데 수사목적이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학문활동에 제한을 가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조국 교수 사건

1) 1993.6.30 울산대 조국 교수는 지난 1990.8.부터 1992.4.까지 사노맹산하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사노맹활동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교수를 확실한 물증도 제시하지 않은채 타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전격구속했다는 점이다. 조국 교수와 함께 「사회주의과학원」으로 구속, 불구속기소된 사람은 황주석 등 10여명이다.

2) 조국 교수는 국가보안법연구 분야를 연구해 오던 소장 법학연구자이다. 그런데 조 교수와 사노맹 총책인 백태웅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그가 '우리사상' 1호 발간에 잠시 기획자문을 해주었다는 사실, 사과원에서 그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는 관련자의 증언 등을 기화로 수사기관, 특히, 경찰은 그를 반국가단체의 핵심간부로 예단하고 무리하게 구속하였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재판과정에서 그가 사노맹은 물론 사과원과 별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민전 사건 이후 처음으로 현직교수를 국가보안법사건으로, 그것도 국가보안법을 전공하는 교수를 구속하였던 것이다.

3.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가. 연혁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성은 봉건적인 구체제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의 권리와 그를 존중하는 투쟁의 산물로서 시작되었으며 그이념은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과 1776년 미국독립선언에 잘 표현되어 있듯이 근대민주국가는 이러한 인간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민주국가 태동의 모태가 되었던 인간의 권리를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에 규정한 것이 기본권이며 그중에서도 자유권적 기본권은 오랜 역사적 투쟁을 통해 얻어진 천부적 초국가적 권리로서 객관적 가치질서의 근간을 이룬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제2문에 나타나 있듯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자유권적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의 산파역할을 하면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활동의 자유이다.

다. 내용

(1) 학문의 자유

1) 학문의 자유란 17세기 영국에서 베이컨과 밀顿 등에 의하여 주장된 이래 1849년 프랑크푸르트헌법에서 세계 최초로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인간이 자연과 사회의 변화, 발전에 관한 법칙이나 진리를 탐구하고 인식하는 행위인 학문적 활동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학문의 자유는 학문하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현행 우리나라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학문을 보호하고 장려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객관적 제도 보장 또는 가치질서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헌법 제2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학문의 자유에는 구체적으로 사색, 독서, 조사, 실험 등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행위인 학문연구의 자유, 그리고 자신이 연구한 연구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는 연구결과발표의 자유가 있다.

또한 학문은 개개인이 고립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복수의 연구자가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상호협하고 비판하며 피교육자를 가르치는 과정을 통하여서 행해진다고 할 때 교육자가 대학 등에서 자유로이 강의하는 자유인 강학의 자유도 포함된다.

강학의 자유는 교수가 강학내용이나 강학방법 등에 관하여 누구의 지시나 감독에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강의실에서 자신의 학문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 말하며 이러한 구체적인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치가 그 선결요건이 된다 하겠다.

3) 대학의 자치

우리나라 현행헌법에서도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대학의 자치는 교수회의 자치를 근간으로 하며 학생의 자치를 일부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음을 말한다.

대학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수회의 자치는 대학의 인사가 교수회의 자주적인 판단에 기하여 행해져야 하고, 대학의 시설 및 학생의 관리도 교수회의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실질적인 제도적보장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어떤 이유로도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할 수 없다할 것이다.

(2) 사상의 자유

1) 사상의 자유란 인간의 내심에 있어서 자유로운 정신작용을 논리적 측면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서 단지 사실에 관한 인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가치관을 기초로 하는 체계적인 사고 내지 신념(정치적 주의, 세계관, 인생관)의 표현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윤리적 측면에서의 보장인 양심의 자유와 구별된다.

사상의 자유는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행헌법 제37조제1항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의 규정과 동조 제2항 후단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현행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양심, 종교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활동의 자유의 기반이자, 자연권에 근거한 초국가적 권리로서 근대 민주국가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선구적역할을 해 온 기본권이다

2) 특히 사상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이념에 비추어 잘못 해석하면 충돌될 우려도 많고 실제 법집행과정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분단상황을 악용하여 정권담당자들이 일제시대에는 치안유지법, 해방이후에는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사상의 자유를 극심하게 탄압한 사례가 많았다.

본질적인 면에서 자유민주주의란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명백, 혼탁하는 위험한 행위가 아닌한 자신에게 대항하는 이념까지도 자신의 틀속에 감싸 안으면서 그 대항이념의 취할 부분과 버릴 부분을 철저하게 사상의 자유시장에 내맡김으로서 그생명력이 유지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탈냉전화의 바람이 불고 우리나라의 분단상황도 점차 화해분위기속에 민족동질성의 이념으로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정법적인 차원에서도 사상의 자유를 보다 폭넓고 유연하게 보장해야 할 규범적인 당위성이 있다 하겠다.

(3)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의견을 담화, 토론, 강연, 방송 등 의 구두의 형식이나 문서, 도서, 사진 등의 출판물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에게 표현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말하며 정신적 자유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자유의 중핵을 이루고 있을 만큼 크나큰 비중을 갖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발달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는 1649년 인민협약에서 선언되고, 1695년 검열법의 폐지로 확립되었으며 1791년 미국 연방헌법에 규정된 이래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제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권리를 가진다” 동조제2항에 “언론출판에 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한의 특수성

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활동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그 특수성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제입법의 합헌성판단에 있어서 경제적 기본권의 규제입법보다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명확성 이론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은 불확정개념이나 막연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그 의미를 정확히 규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위헌·무효가 된다는 이론으로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리이다

비례 원칙에 의하면, 위법한 표현행위를 규제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제재를 가할 때에는 위헌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최소한 이어야 한다.

그리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할 때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라야만 가능하다. 여기에서 “명백”이라 함은 표현과 그 표현으로 발생할 해악사이에 진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존”이라 함은 그 해악발생이 시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위험”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해악의 발생을 말한다

4. 헌법과 국가보안법

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국가보안법은 다른 법률들과 더불어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

장하고 통치기구의 체계와 통제를 규정하는 헌법에 근거하여야 함이 우리 법제도의 기본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법제도의 뿌리를 흔들면서 헌법 위의 법률로 군림해 온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지적된다.

(1) 헌법상 평화통일 지향원칙

헌법 전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원칙은 헌법 제4조 등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헌법이 적어도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점에서 북한을 ‘적’으로 보고있지 아니함은 논리적 필연이다. 다만 유일합법정부론에 근거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헌법변천에 의하여 사문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하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보는 국가보안법의 논리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2) 법앞의 평등원칙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평등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용상 불평등성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또는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만 어김없이 적용되어온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서사연사건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불평등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사건에서 수사대상의 범위, 선택 등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할 만한 기준을 찾아볼 길이 없다. 또한 공소제기된 글들을 작성, 발표한 것은 수사개시 시점으로부터 이미 오래전의 일로서 발표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삼지 않았다가 갑자기 수사를 하여 구속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구나 몇몇은 군복무 중에 구속되었다는 점이다.

(3) 죄형법정주의 위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정부참칭’ 등 구성요건을 이루는 내용이 불명확하고 광범하며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 해석 적용에서도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들로 말미암아 판례상 광범위한 유추, 확대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행위의 가벌성에 비하여 너무나 과중한 형량이 규정되어 죄와 형에 관한 적정성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4) 기본권제한의 한계 일탈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고, 제한되는 기본권과 제한에 필요한 공익 사이에 규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특히 정신활동의 자유에 더욱 철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권 제한 법률의 요건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들 요건을 어느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특히 제7조 5항이 내심 차원의 사상을 처벌하고 있는 점은 위헌의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사상탄압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이 일제하 사상통제의 법체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1925. 제정된 치안유지법에서 그 원형을 볼 수 있다. 이후 미군정법령 55호 및 72호를 거쳐 국가보안법은 형법보다도 먼저인 1948.경 제정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특히 1961. 민주당 정권의 '반공임시특별법안'에서 등장한 이래 반공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련의 반정부활동과 공산주의의 이웃과 주변에서 이와 외형상으로라도 관련된 많은 사상적 흐름들이 국가보안법의 공격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2)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논리는 문제된 행위와 북한의 주장의 단순비교에서 비롯된다.

즉 우리 사회의 내부적 기준에 따라 행위의 위법성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이라는 외연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된다. 여기서 주체적 기준에 따른 사회적 문제제기를 모두 외부적 기준에 의해 재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자율적 해결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어떤 적극적인 기준에 의하여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에 불법성이 판단되어 왔다. 즉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공, 반북한을 위해 존재해 왔던 것이다. 반공, 반북한이 맴돌 적인 부정의 가치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인된 위헌요소

헌법재판소는 1990.4.2.결정89헌가113 및 1992.1.28.결정89헌가8 을 통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관하여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다수의견은 위 조항들에 관하여 일부 위헌성을 명백히 인정하면서

도 통일적인 법질서형성이라는 애매한 헌법해석과 완전폐지에 따른 법의공백의 혼란 및 국가적 불이익이라는 정책적인 이유로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소수의견은 완전위헌 결정을 내렸는바 이글에서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및 소수의견의 결정을 함께 살펴보자 한다.

(1) 다수의견에 나타난 위헌성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찬양·고무죄는 "구성원", "활동", "동조", "기타방법", "이롭게 한" 등 무려 다섯군데의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2) 따라서 위 조항을 문리 그대로 해석한다면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가치질서의 수호와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될 만큼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기본권 제한입법의 기준에 관한 헌법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을 어겨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 및 그와 같은 자유의 전제가 되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있다.

예를들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한 북한집단뿐 아니라 그 구성원인 주민의 모든 분야의 활동도 찬양, 고무해서는 안되며 북한주민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여서도 아니되고, 그 언동의 동기나 의도 혹은 그 내용을 묻지않고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게 위해를 줄정도의 것이든 막론하고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형벌과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3) 문리 그대로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다의적인 것이 되면 법운영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있다. 법규의 문언대로 확대 적용하는냐 한정적으로 축소 적용하느냐는 법운영당국의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람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선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권력과 통치자에 대한 비판이 우연히 북한집단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면 위조항의 찬양·고무죄가 될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도 북한측이 원용하여 선전수단으로 삼을수 있다는 인식만 있다면 이적죄의 고리에 걸수 있는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비판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오용 내지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결국 법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의성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죄형법정주의 저촉될 소지가 많으며, 이는 법의 집행을 받는자에 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4) 위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헌법전문의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의 부분과 헌법제4조의 평화적 통일 지향의 규정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이기 때문에 마치 냉전시대처럼 적대관계에서 북한집단과 접촉, 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을 일관할 수 없고 북한의 정치적실체를 때로는 인정함이 불가피할 때도 있는바, 앞서 본바와 같이 찬양, 고무죄의 처벌범위의 광범위성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의 추구나 단순한 동포애의 발휘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언상으로는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해석으로 연결되어 처벌될 위험성이 있다.

5) 따라서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은 그것을 적용해석함에 있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축소제한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제작·배포 등의 조항은 동조제1항의 행위를 행할 목적이 그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1항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겠다.

(3) 소수의견에 나타난 위헌성

1) 먼저 다수의견에 나타난 국가보안법상의 위헌성을 동일하게 지적하면서 추가하여 국가보안법제5조의 행위 유형인 표현물의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배포, 판매 또는 취득은 그 자체로는 위법적 행위유형이 아니라 동조항의 핵심적 요소인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의 존재라는 주관적 요소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은 내심차원의 사상을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이는 동일한 서적을 누가 소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처벌되기도 하고 처벌되지 않기도 한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은 법률로서도 제한할수 없는 인간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제19조 및 학문과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제22조에도 위반된다.

2) 국가보안법제7조 및 제5항은 반국가단체인 북항에게 이로운 것은 곧 대한민국에 해롭다는 상호 배타적인 적대관계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어 헌법상 평화통일 조항에 위배되며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북한을 대등한 당사자로 전제하고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통일정책은 명백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되는 모순된 결과를 빚게 된다는 점에서 통치행위라는 학설상의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위 조항의 명백한 위헌성이 지적된다.

3) 다수의견이 현행 국가보안법제7조 조항의 문언상의 애매모호성을 한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안전 및 존립을 위태롭게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역시 그 한계나 기준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또다시 위헌성을 면할수 없으며 법률조항들의 위헌성로 인정하였으면 헌법재판소로서는 마땅히 위헌선언을 하는것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책무이다.

위헌성이 너무나 뚜렷한 법률을 아무리 주문과 같이 한정적으로 재해석하여 합헌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위헌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4) 특히 다수의견이 국가보안법상의 한정합헌 논리의 전제조건으로 적시한 남북한 간에 일찍이 전쟁이 있었고 휴전상태에서 남북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하며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것으로 본 상황인식은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서”가 양측총리에 의해서 합의서명되고, 양측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이젠 더이상 유지할수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 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의 근거 비판

(1) 위헌결정으로 발생할 법의 공백상태를 막아야 하고 국가보안법 규정의 전면폐기로 인해서 생기는 국가적인 불이익이 폐기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는 점

위 결정은 폐기의 불이익만 내세우고 폐기의 이익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다. 실제로 아무런 이익형량도 하지 아니하였다. 폐기의 불이익에 관한 설명으로서 결정이 들고 있는 남북의 긴장상태 등은 하나의 상황설명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불이익의 논증이 될 수 없다. 실제로 남북합의서의 서명 등으로 오히려 실제 남북관계는 다수의견의 상황설명과는 큰 거리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평화통일에의 장해라는 구체적인 이익과 논증할 수 없는 국가적 불이익이라는 개연성은 이익형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완전폐기에 따른 불이익만 들고 있으나 판결유형으로서는 입법자의 개정 전까지 위헌법률의 과도적인 존속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선언 또는 한시적인 유효결정이나, 입법에 대한 촉구결정 등도 가능하다.

(2) 형법상의 내란, 외환의 죄는 평화시대를 기초로 하는 고전적 형식으로 우리가 처한 국가안보에 미흡하다는 점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일 뿐이고, 내란·외환죄와의 관계라는 점은 입법자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3) 국가보안법의 위헌요소의 정비는 법률을 폐기하지 않고 합헌적 제한해석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는 점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한 사법부의 그동안의 판단은 대부분 '합헌'의 고민은 고사하고 위헌을 가중시키는 확대해석도 적지 않았다는 현실을 애써 무시하려 하였다.

(4) 합헌적 제한해석의 기준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축소한다는 점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해악을 기준으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나 실질 범의 형식이 아닌 추상적 위험범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관은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해악을 기준으로 국가보안법을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명백한 위험이라는 것은 판례나 이론에 의하여 그 기준이 확립되지 않는 한 어떠한 구속성도 가질 수 없다.

(5) 국가의 존립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유형의 설정

위험의 기준으로 열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독립침해, 헌법 기능의 파괴 등의 유형은 국가의 존립,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말에 못지않게 그 의미의 폭이 넓다. 결국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문제가 있다.

마) 국가보안법 적용상의 문제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은 명백하지만, 결정에서 표현된 제한해석의 기준은 적어도 추상적 방식으로 위 조항의 적용 여건을 구성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적용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먼저 위 결정은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하도록 제한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국가의 독립을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 등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을 말한다.

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가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 체제를 파괴하려는 것을 뜻한다.

즉 다수의견이 표현하듯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국가안전보장은 북한의 수령지도 체제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를 반대한다는 데에 본질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의 방어를 위하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때 도리어 국가지상주의라는 또 다른 전체주의에 빠질 위험이 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주된 제도

적 장치가 바로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적 기본권인 것이며 여기에서 이들 기본권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결국 자본주의를 비판하거나 자본주의와 배치되는 이념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동전으로 간주하는 태도, 반공이데올로기만이 체제내적 사고라고 인정하는 태도는 헌법질서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4장이 같다.

(3) 제7조 5항은 같은 조 제1 내지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반포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된다.

일반적인 표현물의 제작, 반포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위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행위의 위법성 문제). 또 이 조항은 주관적 구성요소인 이적목적과 결합되어 있는 객관적 구성요소인 위법행위가 결여되었다는 특징이 있다(이적목적의 존재판단 문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표현물 자체가 이적성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 보충되어야 한다.

위 조항의 목적에 관하여는, 조항 내용상 목적실현이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행위자체에 의하여 직접 야기되는 형태의 단절된 결과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목적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된 인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7조 자체가 추상적 위험범의 형식을 띠고 있는 연고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이적표현물을 인식하기만 하면 이적목적이라는 불법요소는 추정된다는 등 취지의 판례가 많이 있었다. 여기에는 구성요건이론의 기초를 무시하였다는 결정적인 흠이 있다.

위와 같이 이적목적과 이적 표현행위를 요건으로 한다 해도 이적성 판단은 현실적으로 많은 곤란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현재결정의 반대의견은 위 조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행위는 그 자체로는 위법적 행위유형이 아니고 위 조항의 핵심적 요소는 목적의 존재에 있음을 주목하였다. 결국 위 조항은 반국가단체를 이용해 표현행위를 할 목적이라는 내심차원의 사상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름없어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점을 잘 지적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판례는 이러한 이적성 판단에 관하여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 활동, 주장과 같은 내용인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북한관련서적은 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서적은 내용만으로도 쉽게 이적성을 인정하였다. 즉 해악경향 원칙이 지배되어 왔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행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함을 인정한 것이다.

(4) 위 조항 해석상 다수의견의 결정이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이 원칙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1940년대에 이르러 지배적 흐름이 되었고 냉전시대에 잠시 퇴조하였다가 1960년대 이후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한계이론으로 정립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원칙을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처벌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원칙의 적용은 1. 표현행위의 상황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중대한 해악을 가져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켰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이러한 위험은 근접성과 정도의 문제다. 근접성은 위험이 존재하는 시간, 행위상황이 반대주장과의 토론의 여유조차 없이 급박한가의 여부이며, 정도은 위험의 실질적 중대성 여부이다. 4. 주장과 선동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위험'의 판단에 있어서, 문제된 행위를 둘러싼 여건이 위험을 야기하는 시대상황인지 여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와의 교류나 남북관계의 변화가 그것이다.

반대의견의 논거 중에는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서가 양측 총리에 의해서 합의서명되고 양측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남북간의 긴장상태라는 상황인식이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점은 바로 이러한 '위험'의 인정수준에 관한 적절한 설명이다.

5. 이사건 사법적 개입 기준의 문제

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 더구나 이사건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규정을 적용하기에는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서관모 교수사건에서도 당시 신문사설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학계의 충분한 비판과 토의가 끝나지 않은 학술논문에 대해 검찰이 실정법 위반 여부를 가린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며 이는 서 교수의 주장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 학자들마저 침묵케 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결국 학문은 학문으로 비판되어야 하며 사법적 강제로 재단될 수 없다.